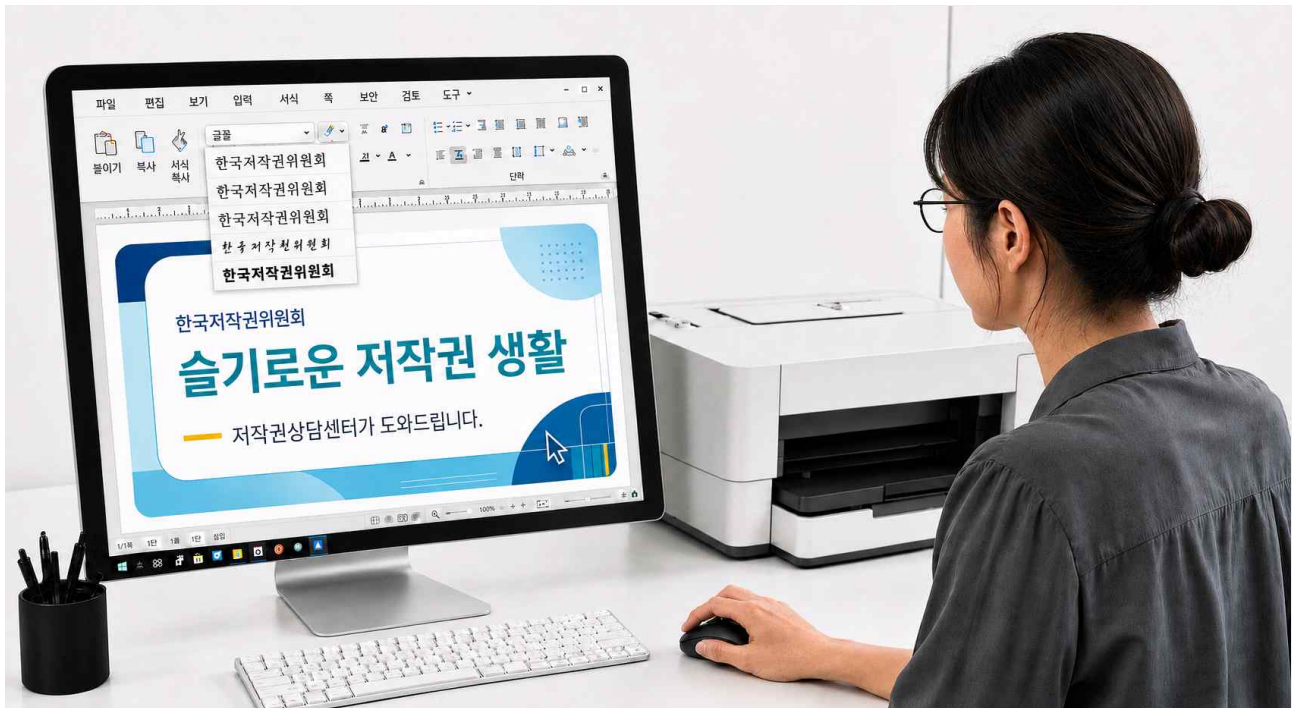


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26년 7월)

- 정식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이벤트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6. 8. 28. / 저작권상담팀 ☎ 1800-5455)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7월 주요 상담사례

- 정식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이벤트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정식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또는 그 공식 업데이트 버전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이벤트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에 따르면 글자체(서체 도안)와 글꼴 파일(폰트 파일)을 구분하고 있다.
 - 글자체는 문자의 본래적인 기능인 정보 전달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반면 글꼴 파일은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파일로서 그 제작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글꼴 파일 자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그러나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꼴 파일을 사용하여 포스터, 배너, 카드뉴스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글꼴 파일 자체를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 즉, 홍보물에 글꼴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글꼴 파일 자체를 온라인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홍보물의 게시 행위는 통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글꼴 파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작권 문제와 별도로 해당 프로그램의 구매계약이나 이용약관, 글꼴 파일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업데이트된 글꼴 파일에 이용기간, 사용매체, 사용 용도, 게시 또는 배포 방법 등에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해당 조건의 범위 내에서 글꼴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 따라서 한컴오피스를 정식으로 구매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었거나 공식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된 글꼴 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태의 이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이용약관이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글꼴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로 이용계약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결국 이벤트 홍보물 제작을 위해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글꼴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글꼴 파일이 정식으로 제공되었다는 것 외에 프로그램의 이용약관 및 글꼴 파일 관련 라이선스에서 정한 이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작성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 용어 풀이

○ 글자체(서체 도안)

- 글자체는 특정한 모양으로 표현된 글자의 집합을 의미한다. 법원은 글자체가 문자의 본래적인 기능인 정보 전달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글자체 또는 서체 도안 자체의 저작물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

○ 글꼴 파일(폰트 파일)

- 글꼴 파일은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제작된 파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TTF 또는 OTF 등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글자의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한 좌표값과 지시·명령 등이 포함된다.
- 대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폰트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따라서 보호대상은 통상 글자의 모양 그 자체라기보다 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이다.

○ 글꼴 파일(폰트 파일)의 이용 범위

- 글꼴 파일의 이용 범위란 프로그램 구매계약 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글꼴 파일의 사용 조건을 의미한다. 이용기간, 사용매체, 사용용도 등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 정식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라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챗봇’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챗봇: <https://chatbot.gov.kt-aicc.com/client/GCL-01-C-00000221-0001/chat.html>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26년 7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한국저작권위원회, KCC한빛체’ 글꼴로 작성